성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황숙희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21년 12월 일
제 출 자 : 황숙희, 전수곤, 김영래
배재만, 구교강, 김성우, 도희재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(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 전부개정)」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,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수정(안 제1조)
-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를 제102조 및 103조로 변경

나. 정책지원관 규정 신설(안 제5조)
- 정책지원관의 배치, 업무에 관한 사항 등

3. 조 례 안 : 붙 임

4. 입법예고기간 : 2021. 12. 17. ~ 12. 21.

5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 및 제103조”로, “성주군 의회”를 “성주군의회”로 한다.

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정책지원관)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사무과 또는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

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 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「지방자치법」제102조 및 제103조---------- 성주군의회----------.
<신 설>	제5조(정책지원관)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사무과 또는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제5조·제6조 (생 략)	제6조·제7조 (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)

붙임 관련 법령

▣ 지방자치법

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
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